

1. 개정 이유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존 운항시각조정공항(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 외 공군 관할 김해·대구·청주국제공항을 추가하여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 대한 운항시각 조정·배분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 나. 운항시각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운항시각 배분 등에 대한 주요한 정책 결정, 운항시각조정공항에 대한 운항시각총량 설정 등을 심의·조정
- 다. 배분된 운항시각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 간 상호교환인가 기준 및 운항시각 조정·배분에 대한 직권조정 조항을 신설하여 대내외적 영향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완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제 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운항시각조정기준” 이란”을 ““운항시각(Slot, 슬롯) 총량”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활주로, 주기장”을 “시설”로, “분야별 수송능력을 근거”를 “분야별”로, “운항가능횟수”를 “운항가능 횟수 중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배분의 대상이 되는 횟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3. “운항시각 배분”이란 제2호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이 제3조에서 정하는 운항시각조정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 총량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하계기간(Summer Season)”이란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계기간(Winter Season)”이란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운항시각정책위원회”란 제4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 설정 및 운항시각 배분·조정·회수와 관련된 기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운항시각 검토회의”란 제4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운항시각의 배분·조정을 위한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항시각조정공항)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김해국제공항(김해기지)
5. 대구국제공항(대구기지)
6. 청주국제공항(청주기지)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항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지방항공청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으로, “모든 운항시각조정공항에 대하여 매 시간당 운항시각”을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 총량 중 시간당”으로, “한다”를 “하고, 제4호부터 제6호의 공항(기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항시각조정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이하 “전략 운항시각”이라 한다) 이 경우, 신규 또는 추가로 유보할 수 있는 전략 운항

시각은 해당 운항시각조정공항의 시설·운영 등의 개선으로 직전 기간(하계 또는 동계) 대비 증대되는 운항시각 총량 중 일부로 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항시각조정기관 운영시간 마감 이후부터 다음 운영시간 시작 이전에 발생 또는 변경되는 불가피한 운항(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항공기 연결을 위한 공기운항(空機運航), 항공기 정비를 위한 이동 등 비사업용 항공기 운항(다만, 활주로 또는 주기장 수용능력 내로 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운항시각 배분신청)”을 “(운항시각 배분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항공운송사업자는”을 “항공운송사업자 등은”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시각의”를 “별표에 따라 운항하려는 공항의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운항시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운항시각의 배분기준)”을 “(운항시각 배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당사자”를 “운항시각조정기관과 당사자”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을 정기편, 부정기편, 그 밖의 운항편 순으로 배분한다.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정기편에 대하여 운항시각 총량을 배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1순위: 전년도 하계기간 또는 동계기간에 운항시각을 8주 이상 연속으로 배분받아 국내 또는 국제 정기편 운항(정기성 전세편 운항 포함)을 하던 자가 국내 또는 국제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기간(하계의 경우에는 하계를, 동계의 경우에는 동계를 말한다)에 전년도와 같은 운항시각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전년도와 같은 기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체 운항시각, 연속하여 5주 이상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운항시각은 1순위에서 제외하고 배분한다.

2. 2순위: 1순위 이외의 운항시각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잔여 운항시각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정기편 운항이 없는 신규 노선 정기편에 운항시각을 배분하고, 신규노선에 대하여 직전 기간 종료까지 8주 이상 연속 운항한 정기편을 해당 기간에 이어서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국정혼란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2. 기상 등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3. 승무원·노조 등의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4. 장거리 노선의 바람변화로 운항시각이 변경된 경우

5. 정부의 항공정책 등의 사유로 운항이 중단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운항 중단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항시각 조정기준)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 확보 및 공항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항별 시간당, 항로당 이착륙 횟수(배분되는 이착륙 횟수의 합은 운항시각 총량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등 운항시각 조정기준은 공항별 운항시각 검토회의에서 논의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시각 조정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배분결과 통보)”를 “(전략 운항시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보된 전략 운항시각을 원활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안전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 운항시각을 배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전략 운항시각의 배분 목적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지방항공청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로, “회수하여야 한다”를 “회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 운항시각을 해당 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시 부과된 조건에 따라 운항시각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가 없이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분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이 계속되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항로 혼잡 및 공항 혼잡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하계 또는 동계) 종료 시에 회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을 즉각 회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 운항시각, 회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항시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운항시각 배분, 조정, 회수 등 운항시각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
2. 제3조에 따른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유보 및 전략 운항시각 설정·배분에 관한 사항
4.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업무수행 적절성 및 운항시각 배분·조정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제항공, 항공산업, 항공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명
2. 제3조에 따른 공항을 관할하는 각 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3. 항공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운항시각 검토회의에 해당 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의 요청(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의 공항인 경우 관할 기지 부대장이 주관하는 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2. 의견 청취를 위해 필요 시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배석
3. 위원회 소집, 안건 작성, 문서 처리 등을 위해 2명 이내의 간사 지명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제7항이나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운항시각의 상호교환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 항공운송사업자 간 상호 교환 없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운항시각을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타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운항시각 직권조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증가 해소를 위한 경우

3. 기상 등 자연재해, 항공 사고 등 공항 운영의 차질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체류 승객 해소를 위한 경우

4. 테러, 감염병 발생 등으로 운항을 제한할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운영시간 연장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신청 접수 및 배분·조정 등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하계 또는 동계)별 운항시각 이행률 분석결과
2. 기간(하계 또는 동계)중 운항시각 오남용 분석결과(5주 단위)
3. 운항시각 배분등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월별 운항시각 모니터링 결과
4. 항공운송사업자의 기간(하계 또는 동계)별 운항시각 배분 신청내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운항시각 배분·조정과 관련된 자료

제15조(국제권고기준 적용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 여건 등으로 인해 동 권고사항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운항시각조정기관이 해당 국가

의 법령 및 관례, 해당 국가와의 항공협정에 규정된 사항에 비해 제한적인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시각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제3국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운송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 국적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동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운항시각조정기준”이란 해당 공항의 활주로, 주기장 및 세관·출입국관리·검역 등 분야별 수송능력을 근거로 산출된 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횟수를 말한다.	1. “운항시각(Slot, 슬롯) 총량”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시설 --- 분야별로 산출된----- 운항가능횟수 중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배분의 대상이 되는 횟수-----.
2. “침투시간대”란 해당 시간대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운항시각조정기준에 따른 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횟수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3. “운항시각 정기배분”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매년 하계(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3. “운항시각 배분”이란 제2호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이 제3조에서 정하는 운항시각조정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 총량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u>같다) 및 동계(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의 운항시각을 하계 또는 동계별로 미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u> 4. “<u>운항시각 수시배분</u>”이란 <u>서울지방항공청장이 운항시각 정기배분을 한 후 남은 운항시각(배분 후 회수된 운항시각을 포함한다)을 수시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u> <신 설> <신 설>	4. “<u>하계기간(Summer Season)</u>”이란 <u>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계기간(Winter Season)”이란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u> 5. “<u>운항시각정책위원회</u>”란 제4조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u>공항별 운항시각 총량 설정 및 운항시각 배분·조정·회수와 관련된 기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하는 기구</u>를 말한다. 6. “<u>운항시각 검토회의</u>”란 제4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u>운항시각의 배분·조정을 위한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 등을</u>	제3조(운항시각조정공항) ① 「<u>항공사업법</u>」 제18조제1항에서 “<u>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u>”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공항(이하 “<u>운항시각조정공항</u>”이라 한다)의 <u>운항시각조정기준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u> 제4조(운항시각의 유보) <u>서울지방항공청장은 국제행사 등 국익 증진 및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모든 운항시각조정공항에 대하여 매 시간당 운항시각 1회씩을 유보하여야 한다.</u> <신 설>	<u>검토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u> 제3조(운항시각조정공항) 「<u>항공사업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u>김해국제공항(김해기지)</u> 5. <u>대구국제공항(대구기지)</u> 6. <u>청주국제공항(청주기지)</u> 7.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제4조(운항시각의 유보)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공항에 대하여 운항시각 총량 중 시간당 --- 하고, 제4호부터 제6호의 공항(기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u>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u>
--	---	--	--

	<u>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항시각조정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이하 “전략 운항시각”이라 한다) 이 경우, 신규 또는 추가로 유보할 수 있는 전략 운항시각은 해당 운항시각조정공항의 시설·운영 등의 개선으로 직전 기간(하계 또는 동계) 대비 증대되는 운항시각 총량 중 일부로 한정한다.</u>
제5조(운항시각 배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항시각 배분을 받지 아니하고도 해당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다.	제5조(운항시각 배분의 예외)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운항시각조정기관 운영시간 마감 이후부터 다음 운영시간 시작 이전에 발생 또는 변경되는 불가피한 운항(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5. 항공기 연결을 위한 공기운항(空機運航), 항공기 정비를 위한 이동 등 비사업용 항공기 운항(다만, 활주로 또는 주기

	<u>장 수용능력 내로 한정한다)</u>
4. (생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운항시각 배분신청) 운항시각조정공항의 운항시각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희망 운항시각 등을 명시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시각의 배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운항시각 배분신청 절차 등) ① ----- -----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 별표에 따라 운항하려는 공항의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운항시각 -----.
<신설>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항시각의 배분기준) 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운항시각 정기배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여야 한다.	제7조(운항시각 배분기준) ①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총량을 정기편, 부정기편, 그 밖의 운항편 순으로 배분한다.
1. 1순위: 전년도 하계 또는 동계의 기간에 운항시각을 배분(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아 국내·국제 정기편 운항(정기성 전세편 운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던 자가 국내·국제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기간(하계의 경우에는 하계를, 동계의 경우에는 동계를 말한다)에 전년도와 동일한 운항시각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2. 2순위: 전년도 하계 또는 동계의 기간에 운항시각을 배분(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아 국내·국제 정기편 운항을 하던 자가 국내·국제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기간(하계의 경우에는 하계를, 동계의 경우에는 동계를 말한다)에 전년도와 다른 운항시각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3. 3순위: 전년도의 하계 또는 동계의 기간에 운항시각을 배분(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아 국내·국제 정기편 운항을 하던 자가 국내·국제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다른 기간(하계의 경우에는 동계를, 동계의 경우에는 하계를 말한다)에 운항시각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4. 4순위: 신규로 국내·국제 정

기편의 운항시각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5. 5순위: 국내·국제 부정기편의 운항시각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신 설>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정기편에 대하여 운항시각 총량을 배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1순위: 전년도 하계기간 또는 동계기간에 운항시각을 8주 이상 연속으로 배분받아 국내 또는 국제 정기편 운항(정기성 전세편 운항 포함)을 하던 자가 국내 또는 국제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기간(하계의 경우에는 하계를, 동계의 경우에는 동계를 말한다)에 전년도와 같은 운항시각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전년도와 같은 기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체 운항시각, 연속하여 5주 이상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운항시각은 1순위에서 제외하고 배분한다.

② 동일한 우선순위간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당사자들에게 배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운항시각 정기배분이 종료된 후 남은 운항시각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운항시각 수시배분을 할 수 있다.

2. 2순위: 1순위 이외의 운항시각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잔여 운항시각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정기편 운항이 없는 신규 노선 정기편에 운항시각을 배분하고, 신규노선에 대하여 직전 기간 종료까지 8주 이상 연속 운항한 정기편을 해당 기간에 이어서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분한다.

③ -----
----- 운항시각조정기관과 당사자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후단 삭제>

<삭 제>

<신 설>

제8조(전략 운항시각 배분계획)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철두시간대 교통량 분산, 신규노선 유치 및 공항 활성화 여건조성 등을 위하여 철두시간대의 운항시각 배분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국정혼란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2. 기상 등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3. 승무원·노조 등의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4. 장거리 노선의 바람변화로 운항시각이 변경된 경우
5. 정부의 항공정책 등의 사유로 운항이 중단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운항 중단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항시각 조정기준)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확보 및 공항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항별 시간당, 항로당 이착륙 횟수(배분되는 이착륙 횟수의 합은 운항시각 총량 범위 이내로

관한 운항시각 배분계획(이하 “전략 운항시각 배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첨두시간대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전략 운항시각 배분계획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첨두시간대 교통량 분산, 신규노선 유치 및 공항활성화 여건조성 등 전략 운항시각 배분계획의 목적에 따라 해당 운항시각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전략 운항시각 배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제9조(배분결과 통보)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정한다) 등 운항시각 조정기준은 공항별 운항시각 검토회의에서 논의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시각 조정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략 운항시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보된 전략 운항시각을 원활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	---

<신 설> 제10조(운항시각의 회수) 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운항시각을 배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시각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배분 받은 운항시각을 해당 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배분 받은 운항시각에 연속하여 5주 이상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 운항시각을 배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전략 운항시각의 배분 목적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운항시각의 회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 회수할 수 있다. 1. --- 시 부과된 조건에 따라 운항시각을 ----- 2. 인가 없이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분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이 계속되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항로 혼잡 및 공항 혼잡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	--

②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국정혼란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2. 승무원·노조 등의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3. 기상 등 자연재해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4. 장거리 노선의 바람변화로 운항시각이 변경된 경우 5. 정부의 항공정책 등의 사유로 운항이 중단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운항 중단이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운항시각조정위원회의 구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하계 또는 동계) 종료 시에 회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을 즉각 회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 운항시각, 회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설	성·운영) 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운항시각 회수, 배분 통보 등의 실무 집행을 위하여 공항공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운항시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항시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신 설>	치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운항시각 배분, 조정, 회수 등 운항시각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 2. 제3조에 따른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유보 및 전략 운항시각 설정·배분에 관한 사항 4.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업무수행 적절성 및 운항시각 배분·조정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	---

<신 설>

<신 설>

1. 국제항공, 항공산업, 항공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명
 2. 제3조에 따른 공항을 관할하는 각 지방항공청의 청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3명
 3. 항공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운항시각 검토회의에 해당 공항의 운항시각 총량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의 요청(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의 공항인 경우 관할 기지 부대장이 주관하는 협의회로 대체할 수

<신 설>

<신 설>

- 있다.)
2. 의견 청취를 위해 필요 시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배석
 3. 위원회 소집, 안건 작성, 문서 처리 등을 위해 2명 이내의 간사 지명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⑧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는 경우
<신 설>	⑨ 위원은 제7항이나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2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운항시각의 상호교환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 항공운송사업자 간 상호 교환 없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운항시각을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운항시각 교환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타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		제13조(운항시각 직권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증가 해소를 위한 경우 3. 기상 등 자연재해, 항공 사고 등 공항 운영의 차질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체류 승객 해소를 위한 경우 4. 테러, 감염병 발생 등으로 운항을 제한할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운영시간 연장 등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 사항 등) ①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운항시각 신청 접수 및 배분·조정 등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항시각조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하계 또는 동계)별 운항시각 이행률 분석결과
2. 기간(하계 또는 동계)중 운항시각 오남용 분석결과(5주 단위)
3. 운항시각 배분 등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월별 운항시각 모니터링 결과
4. 항공운송사업자의 기간(하계 또는 동계)별 운항시각 배분 신청내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운항시각 배분·조정과 관련된 자료

제15조(국제권고기준 적용 등) 이

<신 설>

<신 설>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 여건 등으로 인해 동 권고사항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운항시각조정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관례, 해당 국가와의 항공협정에 규정된 사항에 비해 제한적인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시각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제3국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운송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 국적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동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간을 말한다.

[별표]

운항시각 배분업무 처리 절차

(제5조, 제6조 및 제13조 관련)

1. 공항별 운항시각조정기관 및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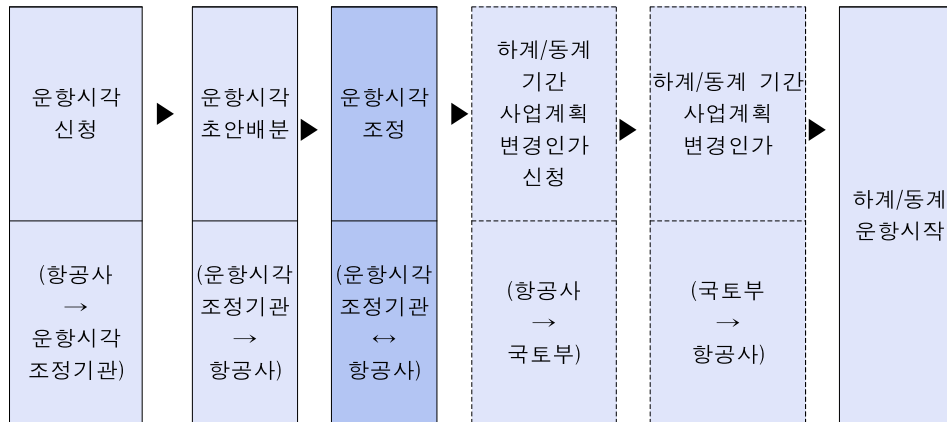
가. 인천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김포·제주·김해·대구·청주공항 : 한국공항공사

다. 운영시간 : 09:00~18:00 (토·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소관 부서명 〉

2. 운항시각 배분신청 및 처리절차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연 락 처	(044) 201 - 4215

비고 : “하계(Summer Season)”란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계(Winter Season)”란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